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동향 –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제수 |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최근 데이터의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메타데이터, 마이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데이터와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정보화촉진 기본법」,¹⁾ 「국가정보화 기본법」²⁾을 제정·시행하여 국가 및 사회 각 분야에서는 업무 효율화 등 국가 정보화를 통해 데이터 축적을 위한 정보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0년대까지 정보화를 통해 다양하게 쌓아 온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는 내·외부적으로 잘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까지는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가 중심이었다고 하면, 2010년대는 축적된 데이터를民間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 정보³⁾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보유한 데이터까지 연계·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융합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다.

데이터를 축적하여 분석하는 기본적 행태는 ‘통계 조사 및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 변화와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 「정보화촉진 기본법」, 법률 제4969호, 1995. 8. 4. 제정, 1996. 1. 1. 시행.

2)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9705호, 2009. 5. 22. 전부개정, 2009. 8. 23. 시행.

3) ‘행정정보’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

수요자 요구를 만족하는 국가정책을 수립하며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결과를 해석한다.

국가적으로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이용되는 국가승인통계는 작성 방식 등에 따라 ‘보고통계’, ‘조사통계’ 및 ‘가공통계’로 구분된다. 2021년 9월 말 기준, 중앙행정 기관에서 작성 중인 국가승인통계는 총 428종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통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현황 등 37종(8.7%)을 차지하고, 질병관리청 소관으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13종(3.0%)의 유용한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 2021).

국가승인통계 자료는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국제 통계 자료로도 활용된다. 우리나라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후 가입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요구하는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작성을 위해 제출한 통계

는 건강상태, 보건의료지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등 총 920개 항목에 이른다. 이 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보건복지 관련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통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국가적으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노형준, 2021, 발간 예정).

2013년도에 정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의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공공데이터⁴⁾)를 제공하고 데이터 이용에 중점을 두었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⁵⁾(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되었다. 공공데이터법 기반하에 ‘개방’, ‘공유’라는 국가정책에 따라 수많은 공공데이터를 정리하여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민간에 공개·개방하였고, 이는 민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되었다. 2020년 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개방·제공하여 민간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전국 약국의 마스크 보유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여 국민이

4) ‘공공데이터’라 함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6호, 2013. 7. 30. 제정, 2013. 10. 31. 시행.

약국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객관적 증거나 과학적 방법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정부 정책에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융합하여 활용 분석을 하여 근거 기반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⁶⁾ (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되었다(윤건, 2019, p. 15). 데이터기반행정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데이터기반행정법 제1조 및 제2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등을 거쳐 정책 수립 등에 객관적, 과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보시스템 및 행정

데이터 등으로 보유·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해 표준화가 잘 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각종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데이터 표현 형식을 미리 표준화하여 수집·저장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각 공공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잘 정제·가공되어 품질이 우수한 데이터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데이터이어야 통계 자료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각종 분석 결과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 정확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연계된 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데이터의 분석 기반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수많은 데이터를 연계·가공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적용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반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다양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SPSS 또는 SAS 등 전문적인 통계 분석 도구들이 있으며, 최근에는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들도 많이 있다.

넷째, 전문적인 통계 분석 도구들을 잘 활용하려면 통계 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통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분석 도구 기능 활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갖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

는 ‘혜안’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등 산하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청구 및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각각 구축·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데이터 전문 인력과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연계·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정책 방향과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건복지 분야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데이터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일반 직원의 데이터 역량 향상도 필요하다. 데이터를 정책에 잘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하며 이에 알맞은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역량을 향상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연계·활용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기반을 잘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의 결합을 지원하는 결합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 안전하게 연계·결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일곱째,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

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두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데이터의 생애 주기에 따라 표준화된 표현 방식대로 정획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품질이 좋은 데이터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또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분석할 수 있도록 가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잘 가공된 데이터는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등 가명정보화하고, 필요한 다양한 외부 정보와 결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중에 외부 민간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각 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개방)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관리체계를 각 기관 내에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 구성 및 분석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통해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윤건. (2019). 데이터기반행정 강화 방안 연구: 공공데이터 융합(integration)을 중심으

로. 한국행정연구원.

통계청 홈페이지. (2021).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pi/2/1/index.action, 2021. 국가승인통계현황 - 작성기관 및 승인통계. 통계청.

노형준. (2021, 발간 예정). 보건복지백서. 보건
복지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370호), 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